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률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및 자격증 발급 등 소방관서장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원활한 위탁사무 수행을 위해서는 위탁받은 자도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소방관서장 업무위탁 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 마련(안 제49조)
- 소방관서장이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8. ~ 12.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8조”를 “제48조 및 법 제48조”로, “위임 받은”을 “위임·위탁받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관서장(제48조에 따라 소방관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8조 및 법 제48조----- ----- 위임·위탁받은 ----- ----- ----- ----- ----- ----- ----- ----- ----- ----- ----- ----- ----- ----- ----- -----.
1. ~ 16.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연 락 처	(044) 205 - 7441